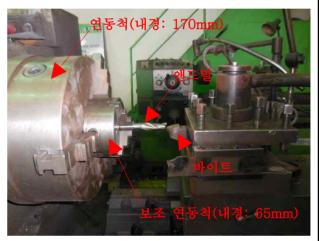
선반작업 중 파편에 맞음

재 해 개 요

'15. 8월 경남 김해시 소재 금속가공 공장에서 선반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고속으로 회전하는 보조 연동척이 이탈하면서 엔드밀의 파편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

재 해 상 황 도





기인물 : 선반

재해상황도

재해발생상황

○ 범용 선반의 연동척에 보조 연동척을 장착하고 엔드밀을 물려 연마하는 과정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던 보조 연동척이 이탈하면서 부러진 엔드밀의 파편이 날아와 목 부위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

※ 기인물 : 선반

- 제조사 : ○○기계(한국) - 제작년도 : 2002년

- 최대 회전수 : 1,350 rpm - 규격 : ∅550mm x L2,000mm

재해발생 원인

-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미실시
- 범용선반의 주축에 장착되어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공물 등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 또는 울 등이 설치되지 않음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범용선반 방호가드 설치
-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공물이 튕겨지거나 절단되어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선반 가공작업 시 방호가드를 설치하여 날아오는 가공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
- 가공물 등의 이탈방지를 위한 안전작업방법 실시
- 범용선반의 주축에 고정한 가공물 등의 이탈방지를 위해 가공물의 규격에 맞는 척을 4개의 볼트로 본체에 견고하게 체결하고 죠(Jaw)를 사용하여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

관련 법규
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)
- ⑥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(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) 사업주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작업의 성질상 덮개 또는 울 등 을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